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	22-88 관련
------------	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9. .

발 의 자 : 강 동 오

1. 수정이유

용어의 정의를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위원회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 수정과 위원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상향하여 변경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안 제2조제1호마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,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창의적인 의견”을 “의견”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,

나. 안 제5조제3항제2호 중 “등의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”을 “등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(중전의 제6호) 중 “학식”을 “식견”으로 하고,

다. 안 제9조제4항 중 “과반수의 출석”을 “3분의 2 이상의 출석”으로, “과반수의 찬성”을 “3분의 2 이상의 찬성”으로 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마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,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창의적인 의견”을 “의견”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제3항제2호 중 “등의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”을 “등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(종전의 제 6호) 중 “학식”을 “식견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과반수의 출석”을 “3분의 2 이상의 출석”으로, “과반수의 찬성”을 “3분의 2 이상의 찬성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다수인 민원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30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요구하는 민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관한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사. <u>동별 민관상생위원회가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</u></p> <p>2. “주민제안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<u>창의적인 의견</u>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사항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삭 제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마. (현행 바목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삭 제>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의견</u>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삭 제></u></p>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

다. 일반 사회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

라.·마. (생략)

바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사무가 아닌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1. (생략)
2. 토목공학, 건축공학, 회계학, 법학 및 행정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
3.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
4.·5. (생략)

6.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 현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9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

<삭 제>

<삭 제>

가.·나. (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)

<삭 제>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--- 등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진 -----

<삭 제>

3.·4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
5. -----
----- 식견-----

제9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④ -----
----- 3분의 2 이상의 출석-----

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
찬성으로 의결한다.

----- 3분의 2 이상의
찬성-----.